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1일, 황정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0.) 상정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7.)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4.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4.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정아의원)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3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3조의3의 취지에 맞게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아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

현실적으로 우수사례 발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발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확산 지원 업무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4.

제 안 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수사례 발굴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확산지원 업무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의3제1항 중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을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및 제2항에”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확산 지원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13조의3(우수사례의 발굴·확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②</u> ----- ----- ----- ----- ----- -----. <u>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u>	제13조의3(우수사례의 발굴·확산) ① --- ----- ----- ----- -----<u>위하</u> <u>여</u>----- ----- ----- ----- -----. ② ----- ----- ----- ----- ----- -----. 1.2. (개정안과 같음)

	<u>2. 여성과학기술인</u> <u>의 육성 및 지원</u> <u>에 관한 우수사</u> <u>례 확산 포럼 및</u> <u>세미나 개최</u> <u>3. 그 밖에 여성과</u> <u>과학기술인의 육성</u> <u>및 지원을 위하</u> <u>여 필요한 사업</u> <u>지원</u> <u>③ 국가는 우수사</u> <u>례 발굴에 따라 결</u> <u>과가 우수한 지방</u> <u>자치단체에 대하여</u> <u>예산의 범위에서</u> <u>재정상 인센티브를</u> <u>줄 수 있다.</u> <u>④ 제2항에 따른</u> <u>사업 추진에 필요</u> <u>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3. ----- ----- ---<u>지원에 관한</u> <u>우수사례 발굴</u> <u>및 확산에 필요</u> <u>한 사업</u> <u><삭 제></u> <u>③ 제1항에 따른</u> <u>우수사례의 발굴 ·</u> <u>확산 및 제2항에--</u> ----- ----- -----.
제14조의2(한국여성과 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제14조의2(한국여성과 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제14조의2(한국여성과 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④ ~ ⑧ (생략)	의 설립 등) (현행과 같음)	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확산 지원</u>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우수사례의 발굴·확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련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확산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3(우수사례의 발굴·확산)</u>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련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u>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u> 2. <u>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u> 3. <u>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u>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및 제2항에 따른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① . ② (생략)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④ ~ ⑧ (생략)	<u>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확산 지원</u>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